
[파 주 문 산 읍 동 물 보 호 센 터 일 반 설 계 공 모]
질 의 답 변 서

2025. 10.

파 주 시 청

[공 공 건 축 과]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1	<p>지침서 15쪽 2.3시설의 규모 (2)시설규모기준</p> <p>지침에 중,대형 수용마리 수는 대형30마리, 중형20마리로 견사 제시 면적은 145제곱미터입니다. 소형견의 경우 60마리에 견사 면적은 36제곱미터입니다. 제공해주신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대형견보호실은 6미터*6미터에 5마리 수용으로 되어있고, 중,소형견의 경우3미터*6미터에 10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시설 규모로 계산하면 대형견 30마리는 6미터*6미터*6개, 중형견은 3미터*6미터*2개, 소형견은 3미터*6미터 보호실 6개가 필요합니다. 합산하면 중,대형견사는 252제곱미터가 요구되고 소형견사는 108제곱미터 요구됩니다. 지침제시면적은 중대형견사 145제곱미터, 소형견 견사 36제곱미터로 지침과 가이드라인의 기준은 많은 면적 차이가 있습니다. 제시된 마리 수를 수용할 수 있는 견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p>	<p>시설규모 기준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별 견사의 규격을 대형견의 경우 보호장, 중/소형견의 경우 보호 케이지 규격으로 준수하여 지침서에 제시된 마리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바랍니다.</p> <p>※ 대형견 보호장 : 가로 100cm × 세로 150cm × 높이 120~180cm (켄넬 2개 연결, 이중구획, 전체 300cm)</p> <p>※ 중/소형견 보호 케이지 : 가로 100cm × 세로 100cm (2단배치 가능, 높이 80cm이상)</p> <p>※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 p8. 구역별 기준 참조</p>	
2	<p>지침서 15쪽 시설규모(중,대형견 견사)</p> <p>중, 대형견 견사 계획시 면적 145.80㎡에 대형견 30마리와 중형견 20마리로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견사계획시 면적이 터무니없이 부족하여, 견사의 크기 및 보호 두수를 설계자의 판단으로 임의조정이 가능한지. 우선 고려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중복. 질의 1번 답변 참고.</p>	
3	<p>지침서 15, 17쪽 견사관련</p> <p>중/소형견 견사 계획시 2단 배치에 문제가 없는지. 보호 동물의 이동이 원활한지 궁금합니다.</p>	<p>중/소형견 견사 2단배치 가능하며 보호 동물의 이동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바랍니다.</p>	
4	<p>지침서 5쪽 3.2공모안의 작성 (1)공통사항</p> <p>'배치도 및 평면도는 도면의 상단이 북측을 향하도록 작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의 경우는 건물의 x,y축이 도면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실명의 표기 등이 도면의 축과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면도는 x,y축에 맞추어 작성합니다. 반드시 상단을 북측으로 맞추어야 하는지요?</p>	<p>배치도는 지침서 p.13 '1.6 주변 현황'의 도면 방향을 참고하여 표현하며, 평면도 작성 시 도면의 X, Y 축 등에 맞춰서 작성 가능하나, 정북방향을 뒤집어 작성하는 것은 지양합니다.</p>	
5	<p>지침서 9쪽 제안서 발표</p> <p>1. 발표자 인원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2. 발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발표자와 통역인으로 2인 구성가능 여부</p> <p>3. 통역을 고려하여 발표시간이 10분에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p>	<p>발표자는 본 설계공모 시행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공동응모사 포함)에 재직한 자 이어야 함.</p> <p>발표자 외 배석자는 1인으로 한정하며, 발표자를 포함하여 총 2인이 참석이 가능하며, 특정 팀을 위한 발표시간 조정은 불가합니다.</p>	